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7)	<b>담 당 자</b>	나 혜 영 사무관 (02-2100-2652)	
			조 대 성 사무관 (02-2100-2653)	

## **제 목 :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관련 증선위 논의결과**

### **1**

#### **증선위 논의 개요**

- 금일 증선위에서는 한국투자증권(주)에 대한 종합검사(검사기간 : '18.5.8.~6.2.) 관련,
  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,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,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음
    - \*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신분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
- 증선위는 4.19일 제8차 증선위에 안건을 최초로 상정한 이후,
  -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, 주요 쟁점사항 논의와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며, 금일 관련 의견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었음

### **2**

#### **논의 결과**

#### **가.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**

- 한국투자증권이 '16.11.7일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(베트남 현지법인)에 미화 35백만달러(399억원)를 대여(기간 : 1년)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\*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,
  - \* 자본시장법 §77의3⑨ 종투사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(해외법인을 포함)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

○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77의3제9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(3,858백만원)을 부과하기로 의결함

※ 증선위는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

## 나.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관련

□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(TRS)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(주)(SPC)가 발행한 사모사채 1,698억원을 매입(18.2.28일)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\*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,

\* 자본시장법 시행령 §77의6②4가.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

○ 증선위는 본건 TRS 계약이 ①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, ②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, ③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5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

○ 다만,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함

### □ 부대의견

○ 금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임

- 또한, 금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

- 다만, 향후 증선위는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하여 감독해 나가고,
  - 특히,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하여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

## 다.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

-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(파생상품 업무보고서)를 제출하면서, CDS,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·주선 거래내역을 누락\*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,

\* 자본시장법 시행령 §36③9. 월별 업무보고서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,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

- 증선위는 과태료 4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

## 라. 인수증권 매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

-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(주)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(90억원)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,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B금융투자(주)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,

-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(주)(대보유통(주)의 특수관계인)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(주)와 사전약속\*(16.10.21일)한 후, '16.10.26. 대보유통(주)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(90억원)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(주)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,

\* 자본시장법 시행령 §68⑤4나. 증권발행인·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·사모·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

- 증선위는 과태료 27.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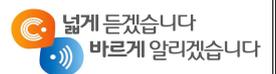
□ 금일 중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,

-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(신분 제재 등)과 함께 조치될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